

# 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7일 12시 12분



# 목차

목차	2
등록현황	3
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	3

##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

2014.04.17 조회수 501 등록자 박종열

관리번호	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0
담당부서	도시계획과
상위법령	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
조례	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
유형	3호 - 금지(부작위)
법령공표일	누락규제
존속기한	2001-10-13
규제시행/폐지일	2001-10-13
규제내용	제53조(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)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의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 해당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할 수 있다.

목록

이전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89

다음글

전라남도 여수시-2013-0091

# Yeosu Web Contents



여수시